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11(월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	주거재생과	담당 자	• 주거재생과장 소성환, 사무관 유지만 • ☎ (044) 201-4941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‘택지지구 아파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’ 보도 관련

- 금번 도시재생법 개정은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,
 -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』을 활용하여 공공임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, 거주기반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며,
 - 신규 택지 내 주택단지 개발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물로 포함하기 위해 법개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의 역량강화,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도시경쟁력 회복을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,
 - 도시재생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등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한국경제, 12.11. 인터넷) >

◆ 공공주택 사업일부를 도시재생 뉴딜로 간주하는 꼼수성 법안 논란

- 50조 뉴딜사업이 85만 공적임대 사업과 겹친다는 비판이 일자 법 바뀌
- 이번 법개정을 근거로 공공주택지구 내 짓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도시재생 뉴딜 성과물로 포함시킬 근거마련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유지만 사무관(☎ 044-201-49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